

北韓

구입 · 납입 · 기증 · 교환 ·
제작 951. 705
상 428 상
국회 도서관

2002 7 (통권 367호)

2002년 7월 1일 발행 / 2000년 12월 12일 국유철도 특별급 소화물 승인 제103호 <http://www.nkore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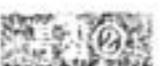


〈휴전의 서문이 된 한포루와 남북인사들〉
(이례북: 6·25종교기사. 前 대북언론역 흑)〉

7.27.

특집① 「휴전협정」을 재조명한다

평화보장 위한 새 협정에 초점두어야
남북대치상황하의 우리의 국가안보
휴전협정의 학생자들



남북자문체의 표지

(휴전협정의) 회생자들

휴전의 제물이 된 포로와 납북인사들

- 패망 직전 김일성은 기사회생 정부의 對北 低자세에 비판여론
- 북에 묶인 국군포로는 5만명· 남에 송환된 것은 8천여 명뿐
- 拉北인사들이 송환 안된 배경
- 병에 시달리다 숨겨둔 납북인사들 독립지사·언론인 등만도 10여 명
- 휴전 후도 540여명 강제납북 KAL승무원 어부 유학생 등
- 맷는 말



이혜복

6·25증군기자 / 전 대한언론인회 회장

7·27 휴전조인이 된 지 어언 49돌이 다가온다. 휴전은 진정 우리에게 무엇이었던가?

끌어안 보이는 한국전쟁의 끝 속에서 발을 빼려던 UN참전국들의 공통된 심리와 패전의 궁지를 벗어나려는 공산군측 계산이 맞아

떨어져 결국 휴전은 성립된 셈이었다.

정치협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 짓자는 휴전조항도 있었으나 뻥뻥 했던 당시의 냉전구조상 실현 가능성 없는 공약(空約)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

패망 직전 김일성은 기사회생 정부의 對北 低자세에 비판여론

38선 대신 길고도 두터운 휴전선 (150마일 북쪽의 원충지대)이 또다시 한반도를 남북으로 갈라놓았다.

'비무장지대'는 말뿐. 두 겹 세 겹 둘러진 철조망과 두 두터운 방벽 그리고 그곳에 춤출히 깔린 지뢰밭이 되어버린 휴전선- 남과 북에 자

미서 모두 1백만명의 무상병력이 최첨단 장비로 상대를 겨누고 있다. 휴전이후 분단의 벽을 넘은 자는 청와대 습격을 시도했던 무장계릴라들(68년 1월 21일) 그리고 같은 해 삼척(三陟)으로 침투했던 무장공비들 뿐. 휴전이후 내 민이나 휴전선 남쪽 깊숙이 땅굴을 파고들었던 북의 불순한 기도와 남파간첩들 외에는 그 누구도 휴전선을 넘나들지 못했다. 휴전선은 과연 무엇인가 되물고 싶다.

휴전으로 덕을 본 김일성은 기사회생(起死回生)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 봉과 직전에 공산독재정권을 추스려서 아들(김정일)에게 대물림 할 수 있었으니 휴전의 덕을 단단히 본 셈이다. 그러나 미귀환 국군포로 5만여 명은 북에 묶여야 했고, 납북인사 8만여 명도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었다.

조만식(曹晚植·조선민주당수· 6·25전 평양고려호텔에 연금되었다

가 구금되어 50년 10위 평양만화 진(仁川)신생은 비밀한 수법을 세워(在北) 애국동포들은 유신 신우를 통해 학살되거나 체포되어 정치범 수용소에서 신음하다 생을 마감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처참한 환경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도 있다.

생명을 걸고 사지에서 탈출해오는 탈북자들이 그나마 처참한 북녘 땅의 실체를 외부세계에 간간이 전해 오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북에 묶인 국군포로와 납북인사 및 북녘 애국동포들의 참상을 모르는지- '입과 귀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관련 가족들의 호소가 애절하고 국민의 비판여론도 뜨겁다.

6·15선언 이후 남북화해협력시대가 열렸다'고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극력 강조하여 왔다.

한편 미전향 장기수를 무너기로 63명(빨치산 14명, 납파간첩 49명)씩 서둘러 북에 보내주었다. 그러면서도 국군포로나 납북인사, 북한인권 문제에 관해서는 목소리를 낮추고 있는 상황이다.

그뿐인가? 수십만 톤의 식량과 비료 그리고 갖가지 식료품과 의약품 등은 물론, 심지어 제주도 산 굽까지 보내주고 금강산 관광을 통해 10억 달러로 헤아려지는 막대한 외화도 건네주고 있다.

왜 정부는 줄 것은 마냥 주면서도

포로를 묵하고 있는지. 그 민들은 이해 부족 때문에 한숨이 있다.

국군포로가 北에 묶인 사연

휴전회담 초기 UN군수은 포로교환을 서둘렀었다. 제네바협정(1950년 8월 12일 체결)에 따라 '포로는 적극적인 적대행위가 끝나면 자체 없이 송환한다' (항장 118조)고 되어 있는 점에 주목하여 공산측이 내세운 '집단적 동시교환(同時交換)에 동의한 태세'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포로심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과 직면했다. UN군에 잡힌 공산군 포로 중에 ①원래는 국군이었으나 1949년 9월 15일 북한에 살해되었거나 사망한 자(北朝鮮에서 살해된 자 혹은 사망한 자)로 ②1950년 6월 25일 전쟁장면에서 살해되었거나 사망한 자(6·25 전쟁장면에서 살해되었거나 사망한 자) 등이 포함되어 있어 사장이 복잡했다. 이들은 거의 대부분 '북송되면 반동으로 몰려 학살위험에 놓임으로써 되돌아 살 수 없다'고 북송에 반대했다.

특히 91년 5월 7일 거제도(濟島) 포로수용소를 시찰하던 UN군 포로수용소장 도드준장이 공산포로들에게 납치되어 3일간 수용소 안에 갇히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터졌다.

당시에 국군수용소는 수용자 1000명이었지만, 그 중 80%는 미군이나 영국군이었고, 그 외에는 소련군이나 독일군이었다.

공산포로수용소에 압파된 북부간접(위상 통항한 가짜포로)과 무한측의 긴밀한 연락망을 통해 포로들을 조직화한 후 대규모 폭동을 일으켜 거제도를 점령한 후 지리산 공비(智異山共匪)들과 후방교역에 나설 계획임이 드러났던 것이다.

이들은 그러기 위해 공산포로 중 반공사상을 지닌 국군 의용군 출신 포로들을 학살·암살했고 무장봉기를 위한 무기까지 밀조하고 있었다.

이를 계기로 포로수용 현마을 주변에 대규모 저항대(民兵) 연대(連隊) 1개만을 분리하는 작업을 계획하여 6월 25일 저녁 10시 30분경에 대규모로 대구로에 몰려 들어온 것이다.

그런데 규모임을 2일 차인 27년 6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포로 거의 전원(2만5천명)을 독단적으로 석방해버려 한때 휴전선이 북부병영 때도 있었다. 그러나 '상병(傷病) 포로 교환'과 '일반포로 교환' 협정은 이미 조인된 후였으므로 북에 묶인 UN군수은 포로와 남쪽에 남아 있는 포로들 중 '북송'을 반대하는 포로와 '남쪽으로 오기'를 거부하는 포로의 심사 및 분



황양동남쪽 25km의 상원(韓原)에 들어온 한국군 제1사단 12연대를 환영하는 시민들(1950. 10. 18)

리작업을 위해 중립국 인도 군(印) 1개 여단이 내려왔다.

이들은 판문점 인근 비부장지대에 캠프의 설치 감시 관리를 담당함으로써 쌍방 포로들은 심사·심복과장을 거쳐 각각 가고싶은 쪽으로 분리송환 되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포로명단에 포함 안 된 제북(在北) 국군포로들은 휴전 이후 북쪽에 묶여 남게 될 수밖에 없었다.

북에 묶인 국군포로는 5만명·남에 송환된 것은 8천여 명뿐

6·25 당시 포로가 된 국군은 과연

몇 명이나 됐을까. 국방부 통계에 의하면 국군 실종자는 모두 4만1천 9백54명이다. 이 가운데 가족의 신고 또는 증언자료에 따라 2만2천5백(54명은 전사자리 됐다).

반면 실종 또는 미확인으로 집계된 1만9천3백92명은 북에 묶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껏 북한으로부터 정확한 국군 포로 명단을 넘겨받은 적이 없다.

91년 북한에서 탈출한 조창호(趙昌浩, 66) 소위도 전사자리된 생존자 중의 한 사람이다. 그간 고령으로 사망한 포로도 있겠지만 약 2만 명 정도는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전쟁당시 북한군은 국군포로를 6

그가 때문이라고 장미
으로 놓은 미친 듯 고개를 흔들고
준다며 그에게 말한다. 무관임을 고
속 국가에 넘겨주는 원칙)을 위반한
것을 자연한 셈이다.

그러나 당시 UN군측은 북한군 포
로 7만5천여명을 북쪽에 넘겨주었
다.

97년에 탑북한 귀순자 증언에 따
르면 북한인류 국제법은 주 자신의
이익을 차단하는 것에 대한 충돌 명이
한경(한경)은 예전 대회에서 경제, 문
화, 그리고 교육, 그리고 정치, 그리고
까지도, 대로 이런 내용 등에서 경
제노동으로 신음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시는 전시로, 경제는 경제로, 문화
는 문화로, 정치는 정치로, 그리고 교육
는 교육으로 각각의 주체로, 각각의
주체로 살피는 그 자체의 주체로, 그 자체
수백만 남녀를 포함해, 나라를 위해
싸운 남편을 생지옥에 방치한 정부
가 야속하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송환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다.(15년), 6월 15일자 중앙일
보 기사 「[북]의 被遺棄 現미니의
술화 인용」

을 하면서 영존국군포로의 명부에
는 사망, 사로로, 그리고 다른
그리고 다른 남북한 국군포로 손재슬
(孫在淵, 80)씨는 12년 동안 경제수
용소와 감옥생활을 하다 무려 30년
동안 한복 우성단장에서 일해야 했
다.

자유를 찾아 생명을 걸고 제3국을
거쳐 서울에 온 손씨는 서울에서
새 보금자리를 마련한지 불과 닷새
만에 간 예술동으로 시민관 같은
곳(직방(職場))으로 돌아 '기다리면 올
다'며 몇 가지 만으로도 새롭게 살고
있고, 미술상과 접触할 수 있는
것이다.

拉北인사들이 송환 안된 배경

그리고 그 이후로 그 이후로 그
후로도 청년 때 만난 그 것인가,
여전히 휴전화답 소리 UN군과
한국군 대로는 표로교환시 남북인
사도 포함시켜야한다고 강력히 주
장하였다. 그러나 국제법에 따라
'포로는 군인과 군속(軍屬)에 국한
된다'는 조항을 내세워 공산족이
이를 반대하여 업의로 못 부른 채 우
선 고로 명단부터 교환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 이후로 그
후로도 청년 때 만난 그 것인가,
여전히 휴전화답 소리 UN군과
한국군 대로는 표로교환시 남북인

사가 되었다. 이에 UN군측은 쌍방포로는 1:1로
교환하고 나머지 포로는 민간인(남
북인사)과 교환하되 휴전조의 후
귀환을 희망하는 나머지 민간인도
석방하자고 제의했으나 공산측은
남북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피
난민'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휴전조의 후 귀환을 희망하는
피난민의 문제를 다룬다'는 예
대보호한 제안은 했고 휴전이후
'실향사민(失鄉私民) 키양위원회
회'를 구성하여 군사위원회 감독아
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집행한
D(휴전협정 세관조)고 학의하고
말았다.

'피난민'이라는 표현 대신 '실향
사민' 구향을 않은 민간인이라는
엉뚱한 표현 속에 남북인사의 송환
문제는 알비무려졌다.

D후 휴전협정 내용에 따라 판문
점에서 실향사민 교환이 51년 3월 1
일 실시되었으나 북쪽에서 남쪽으
로 송환된 민간인은 서울 서리에서
하생봉 행성을 하던 백제노인(白제
老人) '자호노프' 와 38이남에 살고
있고 고로 명단부터 교환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 이후로 그
후로도 청년 때 만난 그 것인가,
여전히 휴전화답 소리 UN군과
한국군 대로는 표로교환시 남북인
사가 되었다. 이 7천여 명은 그 가족들이 남북현장을 목격
하고서 신청한 것이므로 막연한 숫자
가 아니었다. 그중 남자 6천8백81
명, 여자 150명, 직업별로는 공무원
이 1천3백59명으로 가장 많았다.

정치인 85명, 판검사 34명, 변호사
72명, 언론인 75명(실제로 그 후 확
인된 숫자는 1백여 명), 기업인 208
명, 상업 966명, 농업 1천5명, 종교인
82명, 교육자 355명, 의료인 100명,
예술인 36명, 회사원 737명, 기술자
330명, 은행원 94명 등 대한민국을
떠나는 핵심적인 지도급 인사들이
다수 남북했던 것이다.

당시 서울신문에 저명 남북인사
중 9명의 남북 당시의 상황과 그 후
의 가족상황이 '기다리는 사람들'
이라는 제하에 연재된 적이 있다.

남북된 아홉 분(高大忠장 玄相允
씨, 작가 李光洙씨, 언론인 李貞淳
씨, KPK악단장 金海松씨, 서울의대
교수 李甲洙씨, 국회의원 金夏英씨,
야당가 申鼎吉씨, 장덕여고 교장이
던 朴水浩이사, 대법관 朴相基씨)의
가족들의 생활상은 매우 참담하였

다

휴전직후의 조선시라사 그라운드
고지나마는 그들이 저도 모르면서
이 시장을 대체로 그들이 알았으나
그들이 그 시장을 저에게 전달
을 모르는 것 같았는데 그때 대체로 저자
미니어 업았는가? 말씀하기 어렵지
않다.

병에 시달리다 숨거둔 납북인사들
독립지사·언론인 등만도 10여 명

남북인사 중 전쟁와승에서 숨을 거둔 사람도 많았으나 병상에서 선율하다 한 많은 여성을 마감한 분도 많았다. 60년대 후반 신경원(申敬元·전 복한정무원 부부집)씨 증언으로 밝혀진 세운 사명인사들이 유명 경위는 다음과 같다.

먼저 노량자사 부부 모두가 살해
되었고, 그 이후로 노량은 노량
부인에게서 이전 노량으로 치운 후
（首東門）에서 살해당했다. 노량은 63년 8월부터 오래 임원했으나 효
과 없이 퇴위, 그해 9월 9일 고향
(義州)에 다녀온 후 일주일만에 별
세했으며, 김규식(金圭植)·임병의
원의장, 남북협상때 북에 잠류하
사는 만포(萬浦)로 명원에서 원식
이 악화되어 80년 12월 10일 서거
했다.

정부각료나 정당인은 또 어떤가



인민군이 파괴하기 이전의 대동강 인도교, 인민군은 백선업장군의 제1사단이 바로 대동강 전면에 이르렀을 때 다리를 끊었다.

남북된 국회의원들도 다르지 않다. 백관수(白寬洙·전 동아일보 사장·제현국회의원)씨는 미년 3월초 평북 龍川 결핵요양병원에서 흥로 있다 운명했고 장인송(張連松·2대 국회의원)씨는 삼성미래 계열 회사로 평양병원에서 그해 11월 6일 사망했으며 윤기섭(尹基弼·3대 국회의원)씨는 여전히 차관·나서부재로 고지가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외에 10명의 국회의원이 사망했다.

도 남북인사 윤기섭씨와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윤씨의 죽음에 충격을 받고 20년 12월 25일 서평양 기관동 집에서 별세했다. 오하영(吳夏英, 2대 국회의원)씨는 북한 당국 기관에 암살 서기도 하다 20년 8월 출증강 병몰했다.

맑혀진 것만도 이상과 같이 남북
서명인사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명을 얻어 쓸쓸히 세상을 떠났다.

이를 모두는 죄 없이 끌려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쳐 있었던 것이다. 나마지 납북인사들은 차에 끌려간 후 어색되었나, 단 한번이자 마지막으로 국제적십자사를 통해 북측이 몇몇 납북인사 중 생존자 명단을 확인해 준 적이 있었을 뿐이다. 그 결과 납북된 인사들이 이렇게 살아온다는 것을 전진하기 위한 하나의 계책이었다.

휴전 후도 540여명 강제납북
KAL승무원 어부 유학생 등

6·25 당시 남북된 민간인은 5년
10월 정부조사(최근 자료 발견) 명
부에만 8만6백61명(주소 성명 직업
분류)이나 됐으나 6·25 때 행방불
명된 30만 명 가운데 남북된 사람

이 상당수 있을 것이므로 실제 납북된 자는 15만~20만 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히 6·25 휴전 이후 극한 상황이 아닌 터에도 강제납북된 사람이 454명(99년 3월 당국 포함)이나 된다.

11 가운데 88년 12월 11일 간첩들이 납치한 KAL YS-11기(강릉→서울 행) 스튜어디스 성경희 양을 포함한 10명, 70년 6월 5일 해상에서 남북된 해군방송선 '아이' (I) 2정 승무원 20명, 77년~78년 사이에 휴전선 이남 해안에서 남북된 고교생 5명, 해외근무 중이나 유학 중 남북된 9명(71년 4월 5일 서독에서 남북된 유성근 외 3명, 노르웨이에서 78년 4월 1일 남북된 고상문, 서독에서 85년 1월 남북된 신숙자, 오스트리아에서 87년 7월 남북된 이재환,

을 통해 남북교류를 확장하고자 한다.

북으로 갈리는 이로 인해 고려 해상에서 어부·상인·군사로 인한 대상호(55년 5월 28일) 어부 10명을 비롯하여 87년 1월 15일까지 남북 된 동진호 어부 12명 등 남북 어선 115척에 410명의 어부들이 바로 그들이나 그들은 1400명이 되었기 때문이다.

제작년 6월 남북어부 이재근(李在根)씨가 직접 목격한 생존어부 20명의 명단을 밝힌 바 있다. 그때 남북어부 명단에 없던 이름도 있어 실제 남북된 어부 수는 400여 명이 될 줄 알 것이다. 그들은 북한에서 어려 간래로 후시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생화롭게 고기잡이하던 것 없는 어부들과 어선을 남기고 간다거나 때마침 북한의 남포에 선은 이산가족들은 하루아침에 가상과 생계를 잃고 생활고에 허덕이게 되었다. 해외교류 즐기는 유학을 간다거나 남북의 사람들은 물론 가족들과 살아별 속에 어부 생활을 하면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이다.

북한 공산집단은 왜 이와 같은 남 치 민행을 계속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매우 간단명료하다. 버젓한 어부나 유학생 회사원을 남북해 놓고 저들은 "북한을 통경하여 '자진 월

제'라는 계획을 세웠다"고 말 했지만 그게 사실인가? 그것이 문제다.

남한 관대의 규모로 연평도 구별을 통해 역사로 방송 마이크 앞에 대체로 대남방송을 강요하는 등 대사는 고향에 돌아갈 수 없도록 궁지에 빠뜨리기도 하고 관대 서문의 책에 손을 하지 않으면 경제수용소로 보내 암자로 유태인 등을 강요하면서 숨통을 끊는 전인한 구별을 쓰고 있다.

99년 7월 30일 국제사변위원회가 밝힌 바로는 평양 근교 정치범 수용소 '승호마을'에 수용된 55명 중에 고상문(高相文·당시 수도여고 자리교사)씨가 끼어 있다. 79년에 그는 유태인수 중 그로워하 오스로에서 여권을 분실하여 한국내사관들 찾아간다는 것이 북한 대사관으로 전문가 아닙니까 책에 있어 있었던 것. 무안 趙幅도·151씨는 남편이 폐암된 후 생활을 기다리다 정치범수용소에 가뒀다는 소식을 들은 후 고민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일어났던 것이다. 하였다.

더더욱 비극적인 사례로는 KAL 기 남북당시 여자 승무원 성경희(成敬姬·55)씨를 들 수 있다. 6·15 이후 이루어진 3차 이산가족 상봉 당시 방북했던 어머니(李後德·77)와 23년만에 재회했을 때 2세 차녀

예·생애였던 명이 단설 당시(임영기·한국대학 교수)를 대리고 나와 사업하고 주제화자 면분이 박하연은 그야말로 '웃음은 나쁘지만서 대가 징벌 대 말이니'고 되풀았다 고 한다. 남북적후 성경희씨는 북한 '구국의 소리' 방송에 동원된 후 그대 북에 묵어 남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다.

수령 통과 후 공표된 북의 비밀문서는 6·25 당시 서울시민 50만 명을 강제로 남북하여 탄광 등지의 부족한 노동력으로 보충하려고 했다니 108수복이 조금만 늦어졌더라면 남북민간인은 1백만으로 불어날 뻔 했다. 생각만 해도 차가 떨리는 사실이 아닌가.

맺는 말

6·25집단이 주인翁 자도·박세기 씨가 기까워온다. 그렇다고 '미리원으로' '남북인사' 문제를 망각의 어떤 저편에 묻어버려야 할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 피해가족들의 심정일 것이다. 그래서 국군포로의 가족, 남북인사의 가족들은 오늘도 옳고 있다.

사랑하는 가족을 남한의 가족들 품에 데려다 줄 수는 없더라도 저들의 생사여부의 확인만이라도 알려주어야 마땅한 일이다. 남한의 가족들은 이미 숨쳤다면 유해라도 찾

겠다고 올바르고 있다.

제작년부터 6·25전쟁 남북인사가 주 히의회(회장 李美子) 회원들은 손잡고 나서서 청와대에 진정서도 내보았고 배방으로 관련 사료 수집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각방면으로 수소문한 끝에 50년 12월 1일자로 작성된 공보처의 '남치 행방불명 피살자' 명단을 입수할 수 있었다고 한다. 또박또박 172쪽에 기록된 4천1백16명의 피해 날짜 피해유형 장소 약력 주소 순으로 적힌 4천1백16명의 명단 속에서 남북자 2천4백38명의 명단도 가려냈다고 한다.

그러나 6·25의 상처'가 어떠했는지- 잊혀진 역사를 복원하고 자 힘을 모으려 애쓰는 그들의 노력에 비해 '당국이 너무 '냉담하다'고 정부를 탓하고 있다. 이미자 회장은 '정부가 이사를 바로 세운다느니, 제2의 긴장을 한다느니 하면서 공 염불로 공연한 돈만 버릴 것이 아니지 않느냐'면서 개탄하고 있다. '역사는 과연 바로 서고 있는가'- 이 시점에서 거듭 되묻지 않을 수 없다. ■

필자소개

동아일보 사회부장·편집부국장
KBS해설주간
언론중재위 부위원장
대한언론인회 회장 등 역임

미승인 남북자 관련 법적 문제

협정 전후 남북자 모두 송환되어야 한다

- 글을 열며
- 남북 유형별 송환 법적문제
- 남북자 송환을 위한 대책
- 해결방안
- 결 어



유병화

국제법률경영대학원 대학 총장

이 글은 국제법률경영대학원 대학 유병화 총장이 통일교육원이 매년 펴내는 '북한의 이해' 2000년 판에 당시 고려대 교수로서 발표한 동명의 논문을 독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저널리스틱한 문체로 재정리 요약하여 필자의 양해를 거쳐 게재하는 것임을 밝혀둡니다. (편집자 주)

이 달 7월말로 휴전협정 이후 어
언 10주년을 맞는다.

글을 열며

본 기사제작과 관련된 실무 자료는

세월이다. 휴전이후 지금까지 북한에 의해 억류되어있는 여러 유형의 남북자들은 이미 수만 명에 달하고 있다.

정부가 북한 치하에서 속상하고 투쟁하는 남북민족을 구조하는 것은

이 가족들이 살아야 하는 이라움을 끌어내리고 북한의 대책을 강구해 수였으면 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바람일 것이다.

남북 유형별 송환 법적문제

먼저 남북자들의 유형과 송환에 관한 법적문제부터 살펴보자.

남북자들은 국군포로(약 5만여 명), 한국전쟁 중 남북된 민간인(약 2만여 명), 남북이민(400여명), 외국에서 강제 남치된 민간인(약 10여 명), 항공기 피랍자(약 20여명), 북송 세인교포(약 3000여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군 포로」의 경우

이 가운데 「국군포로 송환에 관한 법적 문제」를 살펴보면 이렇다.

휴전협정 제Ⅲ조 51항에 의하면 「남북이 회복할 때에 양측이 확인하고 있는 모든 전쟁포로들을 양측이 합의한 규정에 따라 석방하고 송환해야 한다.」 등 협정 제Ⅲ조 51항에 의하면 민간인들도 고향으로 가기를 원하면 보내주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측이 휴전협정 당시 국외로 포로의 병단을 대량 누락하거나 휴전협정違約발생 후 현재까지의 상황 억류는 1953년에 맺은 포로 협정에 정한 바와 같이

또한 이는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1949)에 비추어보더라도 명백한 위반이다. 국제성을 지닌 동 협약 118조에 의하면 포로는 적극적인 적대행위가 중요되면 자체없이 석방하고 송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다.

그뿐이 아니다. 그것은 국제인권법에도 위반되는 행위이다.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제13조 제2항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국가를 포함한 어느 국가를 떠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자유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간인들은 강제로 남북하여 50여년간 억류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본 세계인권선언(1966) 13조 2항에 거역하는 명백한 위반이다.

이는 또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 제2항, 제1항에 명백히 위반되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비인도적 차사이인 것이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2조 2항 및 4항 역시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어느 나라도 떠날 자유가 있고 아무도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권리를 임의로 뺏길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쟁 중 남북된 민간인송환에 관해 국제적으로 통행하는 법적 조건

로는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세
대비 법령」(中立法)이 있다.

이 법은 전시 민간인의 보호를
위해 전시 민간인을 면제하고
그들의 상해이송을 금지하고
있으며, IGC·ICRC는 적대행위 종
료 후에 억류하고 있는 민간인들은
반드시 석방하고 송환하도록 하고
있어 역시 이를 위반하고 있음을
시작할 수 있다.

「남북어민」의 경우

남북어민 송환에 관한 법적문제는
또 어떤가

남북어선들의 경우 유형이 다양하
여 법률적으로 판단·분석하기 곤
란한 점이 있다. 따라서 유형별로
구분하여 고찰해 보기로 하자.

먼저 국외로 무인 영해를 침범한
경우이다.

이 경우 북한이 대로행위 자체를
작법하고, 영해범 등 상당한 범규를
적용하여 그에 따른 벌금이나 기다
가벼운 징벌을 가하는 것은 국제법
상 불법이 아니나

그러나 국외에서 민족과 민족임이
간접화되는 특수한 경우, 북한은 대리
없이 송환을 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해 구속하는 것은 명백한 국제법
상의 불법행위이다.

이에 대하여는 일반 국제법상의 불
법행위에 관한 국제책임에 관한 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시민적 정

시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HL)
(1949. 12. 12.)에는 전면적인 권리
와 이 경우는 피해자의 권리뿐 아니라
아울러 권리도 침해된 것이 된다.
그 다음 「침범」을 모르고서 북한
의 영해를 침범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도 나포행위 자체는 정
당하나, 선의가 확인되면 당연히 석
방하고 송환하여야 한다. 여기에 간
접죄를 적용하거나 불공평한 대신
선자를 통해 감금하는 등의 행위를
위해서 본 바와 같이 국제법상 불
법행위가 되고, 국제인권법 위반이
며 피해자와 한국의 권익을 침해한
것이 된다.

위의 두 경우와는 달리 북한이 주
장하는 군사수역(영해 범)에서 나
포된 경우가 있다.

북한은 「해리끼지 않는 군사수역」
로 주장하나 이는 국제사회에서 인정
할 수 없는 무리한 주장이다.

해양수역에 관한 해양법 협약
(IMO)이나 국제사회의 일반행동은
종합하면 영해는 12해리까지, 접속
수역은 12해리까지, 경계수역은 24
해리까지 설정한 드 있다.

그러나 국제수역은 경계선과 관
구에 포함되며 항해에 관하여는 한
해의 자유가 보장된다. 또한 영해의
경우에도 양국간의 주의로 인해
리가 안 되는 경우에는 중간선이나
등거리선을 사용하되 특별조약이나
실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특별



거제도 포로수용소의 중국군포로 그들은 모두 송환됐다.

조약이나 실행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남북한간에는 북방한계선이라는
경계선이 오랫동안 관습법으로 존
재하고 있으며 또한 1991년 남북기
보협약 11조에도 이를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 관계에는 휴전협정
과 이러한 관습법 등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제적 인생을 받지 못하는
군사수역 등을 주장하여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북한이 군사수역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국제법상 공해(公海)수
역에서 한국의 이권을 침해하면 불
법행위가 되며, 그러한 불법행위로
나포한 선박의 한국선원들을 수십
년씩 강제 억류하는 것은 어떤 변

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외에 북한측이 남한의 수역에서
남북한 경우 역시 그러한 행위는
북한의 영토관할권을 침범한
것이므로 UN현장 2조 4항을 비롯
하여 기본적인 국제법을 위반한 불
법행위가 된다.

자진 월북한 경우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다시 한국으
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북한이 강제
로 억류한다면 이는 앞에서 본 바
와 같이 국제인권법(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2조 2항, 4
항 등) 위반이 된다.

「국외에서 남북된 경우」

국외에서 남북된 민간인 송환에
관한 법적 문제는 어떠한가.

강제징용의 경우 그 발생국가의 영토침해권을 살피어 UN인간기초권법 등 국제법의 기본원칙에 상반으로 드러나 행위이고 또한 한국의 인적관할권을 침해하는 국제불법행위이다. 이행국 개개인 입장에서 부정적 고지나 국제인권규약의 여러 조항에 상반으로 위반된 불법행위이다.

속에서 원복시킬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역시 한국의 인적관할권을 침해하는 국제불법행위이고, 희생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국제인권법의 기본조항들을 상반으로 위반한 것이 된다.

「항공기 납치」의 경우

남북자 관계에서도 항공기 납치에 의한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에는 「항공기 불법 납치의 어제」를 위한 해이(11) 협약(1970) 등에 의해되며, 한국의 영토침해권과 인적관할권을 모두 침해한 불법행위이다.

국민은 이를 통해 사전제사 원복생각이나 재판제도 분야에 참여하여 주장을 것이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제3국에서 본인의사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거나 가족들과의 상봉 또는 연락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북송 재일교포」의 경우

북송 재일교포 송환에 관한 법적

문제를 살펴보자. 이는 외교관임과 차세(재민)의 인적관할에 대한 것 이므로 문제점은 수 없으나, 당시 북한이 이들의 목숨을 위하여 살인한 정도, 하위신설이나 약속을 한 것은 문제로 볼 수 있다.

남북관계를 기반 하루에 대하여, 인적관할권에 근거하여 외교 보호 등의 법적 보호를 주장할 수 있으나, 남북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법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

그리나 북송 후 이들이 일본에 있는 가족들과의 연락이나 천적방문 등을 경제로 금하는 것은 1993년 국제인권규약 등 국제인권법 위반으로 위반하여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게 된 것이다.

다아기 당시 일본에 금금되어 있는 북송교포들의 경우는 더욱 국제인권규약 등 국제인권법 위반에 의한 인권침해 정도가 너무나 막힘이라고 고대한 시선이다.

남북자송환 위한 대책

이들 남북자 송환을 위한 대책으로는 ①한국정부의 역할 ②국제기구의 활용 ③관련 국가들과의 공동대처 ④억류자 가족 및 사회단체의 지원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자.

「한국 정부의 역할」

무엇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

은 「한국정부의 인권에 대한 인식세계」와 「국제적 차세이다. 정부는 안보, 경제, 문화 등 각 분야별로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 주체화 노력하여, 차별별로 구분하여 남자행위나 남북자 송환문제 등 대해서는 강력한 비판을 세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외무부 통일원 국가정보원 등에 남북자에 대한 문제를 처리하는 전담부서를 만들어 지속적이고도 치밀하게 남북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이를 위한 학계 등의 연구활동을 지원 장려하고, 남북자 송환문제를 전략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해야 한 것이다.

「국제기구의 활용」

UN총회(특히 제3위원회), 국제적십자사, 국제사면위원회, 기타관련 국제기구에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여 주제사회와 압력을 유도하고 국제여론을 물리 일으키야 한다.

「관련 국가들과의 공동대처」

민간이래기 남치의 경우는 탑승자의 국적국가를, 북송교포의 경우는 일본, 서해북방한계선 남쪽에서 어선을 남북한 경우는 휴전협정위반이므로 관련 당사국인 미국등과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사회단체 억류자 가족 지원」

가족의 남북으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사회적 혼란을 겪고 있는 남은 가족들을 을 보호, 지원하는 대책을 세우고 단체를 결성하여 억류자 송환이나 치우개선 등을 위해 활동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또한 종교단체 등 각종 사회 단체가 인도적 입장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각종 활동을 지원, 장려해야 한다.

해결방안

이를 해결하기 방안으로는 일단 ①남북교섭 ②불법행위 책임추궁 ③외교보호권 행사 ④국제여론의 활용 ⑤경제제재 ⑥국제분쟁 해결 실마의 활용 등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교섭」

남북관계가 발전하여 상호신뢰 관계가 형성되면 가장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방안이다.

「불법행위 책임추궁」

어선이나 항공기 납치의 경우는 대체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북한이 불법행위로 인한 국제책임을 짓게 된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발전되어야만 이러한 법적 절차에 의한 책임추궁이 현실적으로 유용하게 되며 그

전에도 이를 위해 남북한간에 협력적인 여러 분쟁 해결 실무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교보호권 행사」

여기서는 국적국가가 북핵문제로 인해 주민을 대상으로 해인을 위하여 불법행위를 한 국가를 상대로 외교보호권(손해배상청구)을 행사하는 것이 일반국제법 원칙이나 남북한 관계는 물론 아니라 그 주사상에 비추어 남북관계의 신선 없이 는 이런 맥락 전략이 주제로 대화하기 이다운 것이다.

「국제여론의 활용」

국제기구의 결의, 특별보고기구의 설치, 비정부기구의 보고서 작성 등을 통하여 국제여론을 물리 일으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다.

「강제제재」

북한이 더욱 개방되고 남북한의 경제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발되면서 한국정부 또는 관련국들과 공동으로 경제 제재를 추진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 될 수 있으며 앞으로 더욱 효과적인 해결수단이 될 것이다.

「국제분쟁 해결절차의 활용」

북한이 상상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이 된 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도 편리한 방안은

「분쟁해결 절차의 이용」이다. 물론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을 일상화하기 위해서는, 표류 국민 분쟁 해결 전략의 마련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을 통해 대북제재 및 분쟁해결 절차를 확립하고 마련하여 두어야 한다.

「피해보상에 대한 법적 시도」

①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하여

- 북한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
남북교섭이나 국제분쟁 해결 절차 등을 통하여 북한에 대해 남북자치 강제억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추궁은 법리적으로는 가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이 더욱 개방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며 남북관계가 더욱 개선되어야만 그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다만 북한은 그동안 이미 한 차원을 높여온 행위이다.

② 정부에 대한 청원권 행사

남북자 가족 등이 한미 제3조에 규정된 청원권을 행사하여 북한의 남북자의 강제억류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에 대해 피해구제를 요구하거나,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청원하여 위법이 되면 그에 의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도 있다. 참고로 국군포로에 대하여는 1988년 1월에 '국군포로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정부의 송환 대책과 기본생계费 수립한 의무와 민족 상잔금 특별지원금 주기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③ 정부의 의무불이행(부작위)을 이유로 한 국가배상 청구

정부가 남북자들의 송환을 위해 이 세까지 노력은 해 왔으나,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나 미흡하다는 점을 입증하여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필요가 있다. 이하 요간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아마 제 10조 후단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원칙에 의해 북한에 억류되어 기본권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남북자들의 송환을 위하여 국가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위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의 다양한 해결방안 등을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시도하여야 하는 것이다.

국가의 의무태만 및 불이행(부작위)은 ①남북방지대책 수립 미흡 ②전담부서 설치와 일관된 송환대책 수립과 시행의부의 불이행 ③남북교섭과정에서의 적극적 지속적 송환요구의무 불이행 ④G·D 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의 의무태만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남북방지대책 수립 미흡」

남북이민의 예를 들면 휴전아래 3000여명의 어민이 남북되었는데 (그중 300여명은 송환 됨) 최초의 남북사건 이후에 어민들의 남북을 방지할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 시행하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어선남북이 발생한 것은 국가의 보호의무불이행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전담부서 설치와 일관된 송환대책 수립 시행 의무불이행」

정부는 휴전 이후 수많은 국민이 북한에 의해 강제억류되어 있음에도 이들을 전담하는 부서하나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생사확인등의 정보수집과 현황파악을 게을리했으며 장기적이고, 철저적인 송환대책의 수립 없이 상관상황이나 남북관계, 북미관계 주민사상에 의해 그 정책을 수시로 변경해 왔다. 또한 남북자 가족들에게 남북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가족들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구제하는 노력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남북교섭과정에서의 적극적 지속적 송환요구의무 불이행」

이점 또한 정부가 그간 북한과 수없이 많은 접촉을 하면서도 국민의 인권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남북자 송환 문제를 강력하고도 현

설작으로 개시하지 못하고 암울이 사인이다.

남북관계가 개선으로 인한 정치적 경제적 협력과나 정권유지 위한 홍보효과를 우선시하여 남북자문제를 비온적 소극적으로 대처함으로서 북한과의 협상에서도 주도권을 빼앗기게 물러 다니는 인상을 주고 있다. 북한은 현재까지 국군포로는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남북자문은 「아미(亞美)원칙」이라고 계속하여 주장하고 있다.

「6·15 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의 의무 태만」

지난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의 제선정에서 보더라도 정부는 남북자 송환 문제를 포함한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가 있었다. 반면, 북한은 우리와는 대조적으로 시종일관하여 미전향 장기 수 북송 등을 주장했었다.

「남북자 및 그 가족들의 피해 발생」

남북자들은 북한에서 대부분은 정치범수용소 등에 수용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허위 당한 채 살아오고 있으며 학교에 있는 그 가족들은 정부의 무관심과 무대책으로 인하여 성신적 경제적으로 박약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

남북자의 피해는 직접적으로는 북한의 만인류적 행위로 인한 것이지

미. 한국정부가 일에서 본 미의 전이 나온다. 그래서 법법으로 대체로 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송환이 실현되었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정부의 부관심, 의무해태로 인하여 남북자 가족들이 지난 기간 동안 받은 정신적, 경제적 고통도 많이 감소되었을 것이다.

결 어

이런 삶을 고려해볼 때 정부가 그간의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반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남북자와 그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성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그중 정부의 무관심 부대책으로 인하여 남북자 가족들이 입은 성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좀더 현실적이고 적실적인 권리구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글자소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석사)
프랑스 Paris 1 대학 법학대학원 국제법
외부로 정책자문위원회 교육
Maryland University School of Law 석원강사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주요저서 및 논문으로는 「국제법총론」
「법학개론」 「한국UN군사령부와 유엔(聯合國)에
관한 법적 문제」 「국제기구의 구조와 관리」
「법률종주의의 뿌리」 「한국경제수역
선포의 법적 문제와 그 처리방안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자·그·마·한·이·야·기

미송환 국군포로



휴전협정 반세기 가까운 세월이 흐르도록 아직껏 못 돌아오고 있는 미송환 국군 포로는 과연 얼마나 될까. 북한의 주장이 다르고 우리의 추정숫자가 다르기는 하나 대체로 5~8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이야말로 휴전협정의 대표적인 회생자가 아닐 수 없다.

지난 50년 만만히 6·25전쟁 때 포로가 된 「국군」 상당수가 북한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지난 94년 조창호씨의 귀환 이후 양순용 장무환 김복기 박동일 씨 등 국군포로가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으로 귀환했으며 최근에도 국군포로 4명이 돌아왔다.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국군포로는 지난 56년 6월 「해방전사」라는 이름으로 석방되어 북한공민으로 편입됐으나, 60~70년대 이후로는 다시 거의 대부분 통제구역으로 추방되어 광산 공장 집단농장 등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귀환한 국군포로 증언으로는 285명, 탈북 귀순자 증언에 의하면 40명, 그리고 국내 연고자가 증언한 18명 등 최소한 343명의 국군포로가 북한에 생존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방부가 말간한 「국군포로 문제」에 따르면 유엔군사령부가 지난 53년 8월 UN에 제출한 「휴전에 관한 특별보고서」에 근거하여 6·25전쟁 당시 국군포로 및 실종자 수를 8만 2천 318명으로 밝히고 있다.

북한이 전쟁기간인 지난 50년 12월 평양방송을 통해 발표했던 국군 및 유엔군 6만 5천명 역시 포로교환 때 송환된 국군과 유엔군 1만 3천 409명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이 발행한 「항미(抗美)원조전사」에도 「중국해방군」이 전쟁에 개입한 이후 본래는 포로 숫자를 4만 6천 523명(국군 3만 7천 815명, 유엔군 8천 788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은 국군포로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

오늘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의 「생존 여부」 뿐만 아니라, 그들 가족이 이제까지 겪어온 「보상받지 못한 고통스러웠던 50년 세월」 일 것이다.